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6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도 수입식품 관련 영업을 위한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조건부 수입 검사 요건을 확대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가 광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안내 문구를 그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변경 신청한 영업장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유 사무실 처럼 같은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사람이나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또는 같은 시설이나 장소를 여러 사람 또는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를 “첨부(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각각 “해당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7 제1호가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영업의 형태로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 8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광고를 할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표 13 II에 제2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8 제3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별지 제1호서식 중 “Facaility”를 “Facility”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인 제2호 중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을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또는 같은 시설이나 장소를 여러 사람 또는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로 함께 사용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나목 중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을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또는 같은 시설이나 장소를 여러 사람 또는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로 함께 사용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서류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9,3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관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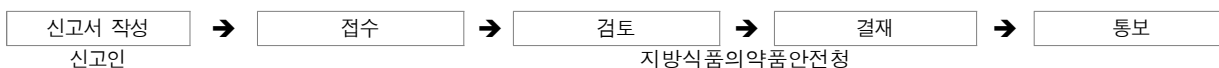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절차



별지 제28호서식 중 “수입쇠고기”를 “수입쇠고기 및 수입돼지고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사목 및 별표 13 Ⅱ에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 ----- ----- ----- ----- ----- ----- <u>제출해야</u> ---- ----. ----- ----- ----- ----- ----- <u>확인해야</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하는다)</u>	2. <u>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또는 같은 시설이나 장소를 여러 사람 또는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하
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민
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가족관계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해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

----- 첨부(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
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
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
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
다.

1. ~ 6. (생략)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법 제37조 또는 「농수산물품
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
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
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
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
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
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

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
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여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해당한다)

8. -----

----- 해당한다)

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9. 삭 제

10.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
④ (생 략)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
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
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
(해당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
입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

3. · 4. (생 략)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 · 검사 · 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u>증표</u> 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u>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 외한다.)</u> 3. · 4. (현행과 같음)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증표</u> (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를 포 <u>함한다</u>)-----.
--	--